

운영규정 개요

I.기본정보

기관명	내덕노인복지센터		
설치일자	2013. 02. 06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종류	주간보호
소재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62번길 1-18		
전화	043-216-9811	FAX	043-216-9812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II.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이용정원은 설치기준에 의거 21명으로 한다.
2. 이용자 모집 방법 :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 종류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유관시설, 사회복지 전문요원, 재가복지시설 연계, 지역단체의 모임 등을 적극 활용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급여계약	내덕노인복지센터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용 절차, 이용수칙, 사고 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 별 비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 대상자의 경우 1등급~5등급자의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 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 또는 보호자 요청 및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이외의 어르신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이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해제	<p>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p> <p>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p> <p>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p> <p>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p> <p>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p> <p>10일 이상 입원 또는 외박을 하였을 때. 다만, 이용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p> <p>입소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누락하였을 경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p> <p>이용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 신청을 하였을 때</p> <p>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p>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신원인수인 권리	<p>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p> <p>이용자의 간호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p> <p>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p> <p>이용자가 안전한 생활여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p> <p>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계획서에 따른 수발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p> <p>계약자(보호자)가 센터에서 실시하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 질을 평가 할 수 있는 권리</p> <p>이용자가 인권침해 및 노인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지 확인 할 수 있는 권리</p> <p>이용자 및 계약자(보호자)가 센터의 운영위원회에 위원으로 이용자를 위한 개선사항 및 고충을 논의 할 수 있는 권리</p>
신원인수인 의무	<p>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p> <p>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p> <p>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p> <p>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p> <p>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p> <p>서비스제공자의 의무</p> <p>어르신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p> <p>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p> <p>표준 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p> <p>이용자의 의무</p> <p>월 이용료 납부 의무</p> <p>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p> <p>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p> <p>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p> <p>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p>
배상책임 보험	<p>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p>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운영규정 참조	센터 주 출입구 위치에 비치되어 있음.
---------	-----------------------